

『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추은희 의원 외 24명

2. 제안이유

가.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,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기계설비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(안 제2조~제3조)

나. 시장 및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(안 제4조~제5조)

다.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련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준용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,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,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」은,
 -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,
 -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함에 따라 불법·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내 전문 건설업체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,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반발 등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